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 안 번 호	
------------	--

제출일자 : 2001. 11. .

제 출 자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현 조례의 회계관직에 지출원의 규정만 있어 조례 운영에 부적정하여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출납원 규정으로 개정함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기금의 결산보고 기일이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수정함.

2. 주 요 골 자

- 조례 제9조제1항제3호 "지출원 : 가정복지담당"을 "출납원 : 노인 업무담당주사"로 개정.
- 조례 제10조(결산 및 보고) 중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80일 이내"로 함.

3. 참 고 사 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
 - 행정자치부 재경13300-147('98. 4.22)호
-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등) 제3항.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출납원 : 노인업무담당주사

제10조중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를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조문 대비표

현행	수정안
제9조(회계관직지정)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생활복지국장 2. 분임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3. 지출원 : 가정복지업무담당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관직지정)①----- ----- ----- -. 1. ----- 2. ----- 3. 출납원 : 노인업무담당주사 ②----- ----- ----- -----.
제10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u>출납폐쇄후 3월</u>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 및 보고) ----- ----- -----<u>출납폐쇄후 80일</u>이내에----- -----.